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71197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7119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2499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양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고현석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선고 2022. 8. 25.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2499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10,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69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주위적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 및 이 사건 전기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주택기금으로부터 15,055,000,000원(이율 연 1.572%), 공적기금으로부터 1,673,000,000원(이율 연 1.538%)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의 계약거절로 원고의 공사 수급업체 선정이 103일 지연되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74,045,808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건축준공예정일이 2022. 11.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1학기가 시작하는 2023. 3. 1.에서야 기숙사 개관을 하게 되어 개관일까지 추가로 지연된 110일에 해당하는 이자 79,078,048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계약거절로 원고는 합계 153,123,856원(= 업체선정 지연으로 인한 손해 74,045,808원 + 개관 지연으로 인한 손해 79,078,048원)의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는 이 사건 각 입찰보증금 합계액 79,697,100원보다 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상당액인 79,69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입찰절차에서 피고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본계약인 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는 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28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고에 의하면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전기 공사의 경우 5일, 정보통신 공사의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본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피고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공고에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전기 공사) 또는 10일(정보통신 공사)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건축공사 낙찰자 선정에 따라 계약 및 착공 시점이 확정될 예정임’이라고 명시하여 계약

체결 기간을 낙찰일로부터 5일(전기 공사) 또는 10일(정보통신 공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낙찰일로부터 5일(전기 공사) 또는 10일(정보통신 공사)까지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낙찰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 계약 체결을 포기할 때까지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의 계약 체결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고에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의 입찰보증금 상당액인 14,721,987원(= 294,439,758원 × 5/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 사건 전기 공사의 입찰보증금 상당액인 51,500,000원(= 1,030,000,000원 × 5/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공고에 계약 체결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공사 낙찰자 선정에 따라 계약 및 착공 시점이 확정될 예정'이라고만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을 통보하는 구조로서 피고로서는 계약 체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21. 1. 22. 이 사건 정보통신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21. 3. 24. 이 사건 전기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달 이상이 경과한 2021. 4. 28.에서야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점, ③ 그 사이 2021. 1. 22. 기준으로 7,872달러/톤이던 구리 시세가 2021. 4. 28. 기준으로 9,832달러/톤으로 상당히 상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 액수를 손해배상 예정액인 이 사건 각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110,993원[= (14,721,987원 + 51,5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김현주, 판사 임효빈